

10 (第94回一運營第1次)

<p>4. 바람직한地方自治發展과地方財政擴充을爲한制度改善에關한建議案(文龍子議員 外 14人發議)</p> <p style="text-align: center;">(15時 31分)</p> <p>○委員長 柳德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바람직한地方自治發展과地方財政擴充을爲한制度改善에關한建議案을 상정합니다.</p> <p>(議事棒 3打)</p> <p>동 건의안은 4월 29일 文龍子議員 외 14인의 의원 발의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文龍子議員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p> <p>(參 照)</p> <p style="text-align: center;">바람직한지방자치발전과지방재정확충을 위한제도개선에관한건의안제안설명서</p> <p>문용자의원입니다.</p> <p>바람직한지방자치발전과지방재정확충을 위한제도개선에관한건의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p> <p>1991년 지방의회 개원과 '95.7.1.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출범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었으나 중앙정부는 ①자치입법권 ②지방자치조직권 ③지방재정권 확충 ④지방의회 발전저해 ⑤지방자치사무 협약 등으로 관계법규에서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바람직한 지방자치발전에 큰 걸림돌로 되어 있습니다.</p> <p>지방자치는 21세기를 향한 국제사회 환경 변화와 국가경쟁력 강화 그리고 시민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중요하고 국가발전과 지방자치발전은 국가발전의 근간이며 중대사안인 바, 바람직한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재정권 확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중앙정부에 건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p> <p>첫째, 지방자치 자치조직권 확보를 위하여 자치입법권을 확실히 하기 위한 조치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의 제정범위의 확대와 처벌규정부활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 개정 ○ 지방자치적 성격의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 개정 ○ 자치조직권 보강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p>제4조, 제101조, 제102조 개정</p> <p>○ 과도한 중앙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58조, 제159조를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p> <p>둘째, 지방자치 활성적 추진은 지방재정총족에 있는바, 자치재정권 확보에 저해되는 관계법규를 적극적으로 개정 추진하기 위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자율권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개정 ○ 내무부예산편성지침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과 징계 등으로 통제하고 있는바, 내무부예산편성지침은 합리적 수준운용으로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0조 개정 ○ 지방세의 세목세율과 사용료 수수료 결정을 지방의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세법 제2·3·4·5·6 및 6조의2 개정 ○ 지방세 감면권을 지방의회에서 위임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세법 개정 ○ 지방자치단체 기채 발행권 개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공기업법 제19조 개정 ○ 지방공사설치권을 지방의회에 위임하도록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3항 개정 ○ 택지개발, 주택개발보급 개발권을 지방의회에 위임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p>셋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조화 요인 관계 개선을 위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98조, 제99조, 제159조의 개정 ○ 광범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 시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0조 개정 ○ 예산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장 재의요구권 개선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9조, 제123조, 제118조제3항 개정 ○ 의원 자료요구, 서류제출 불편 시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제35조의2 개정 ○ 형식적인 행정감사 시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6조, 제37조 개정 ○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83조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	--

<p>다.</p> <p>넷째,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배부기준 개선실시를 촉구하기 위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지방재정분야 ②지방조직인사제도분야 ③지방공기업분야 <p>에 관하여 지방자치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발전 국가경쟁력 강화에 지방자치가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견의하였습니다.</p> <p>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p> <p>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한지방자치발전과지방재정확충을 위한제도개선에관한건의안을 제안하였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p> <p>감사합니다.</p> <p>.....</p> <p>○委員長 柳德烈 다음은 專門委員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p> <p>○專門委員 安錫洙 專門委員이 보고 올리겠습니다.</p> <p>.....</p> <p>(報 告)</p> <p>바람직한지방자치발전과재정확충을위한 제도개선에관한건의안 검토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건의안은 1991년 지방의회 재구성과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각종 법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상 제약으로 지방자치권한인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이 침해를 받고 있으므로 지방자치제도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각종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것임. ○ 우리 의회에서는 운영위원회, 재무경제위원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등에서 심도 깊게 심의되고 또한 견의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 건의안에 포함된 상당부분 즉, 지방자치발전과 의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법과 지방양여금법 등 개정, 지 	<p>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조직 개편,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 독립 등 각종 건의안을 채택하여 중앙정부, 국회 등 관계기관에 건의한 바 있고, 또한 동 건의안의 주요사항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의회와 각 지방의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각종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이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동 건의안을 국회,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에 재차 건의하는 것은 각종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겠음. ○ 다만, 동 건의안의 일부내용이 중복된 부분도 있고 문서 항목 기호도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정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견의 내용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조정 및 자구수정을 할 권한을 위원장께 위임할 여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p>.....</p> <p>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p> <p>○委員長 柳德烈 그러면 동 건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崔鍾根委員님.</p> <p>○崔鍾根委員 지금 專門委員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과 같이 委員長께 위임해서 중복된 사항과 문구 수정 등을 하도록 하는 專門委員 검토의견과 같이 동의합니다. 위원장님께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p> <p>○委員長 柳德烈 趙相勳委員님 말씀하십시오.</p> <p>○趙相勳委員 지금 이 건의안을 마련하신 文龍子 同僚委員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데요, 사실 그 내용으로 봐서 굉장히 방대하고, 또 지금까지 우리 議會에서 제출했던 다양한 건의안에 비해서는 훨씬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고, 또 우리 위원회로서는 존경을 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p> <p>그렇지만 지금까지 개별사안, 구체적이고</p>
--	---